

2022년 제2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2년 제2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고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
산업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전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관할 지역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3.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

※ 실적 및 필요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4. 응시자격 요건

●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8급이하: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관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파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파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채용공고 마감일】

- 필수요건: 자격요건과 경력요건 동시 충족

- 우대사항: 경상남도 고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채용분야	임 용 자 격
	(자격요건 1개 이상, 경력요건 1개 이상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산업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p>(자격)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 <p>※관련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p> <p>(경력)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p>

- ※ 실무경력 중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

5. 보수 및 복무

- (연봉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연봉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5,877	39,859	34,877	하한액*35/40(h)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 점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필요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성군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공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자(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2. 2. 9.(월) ~ '22. 2. 21.(금)	'22. 2. 21.(월) ~ 2. 23.(수)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2. 2. 24.(목)	'22. 3. 4.(금)	'22. 3. 7.(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예정임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 재공고시 1차 서류전형 응시자는 접수한 것으로 간주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text{cm} \times 4.5\text{cm}$) 1매 별도제출
 - 응시수수료: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내 인증기 수납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 5,000원
-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동봉하여 제출
- 이력서 1부 (붙임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A4 2매 내외로 자유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서식, A4 3매 내외로 자유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분부터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처,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할 것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불임 서식으로 작성
- 접수처: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4층), ☎ 055-670-2093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9.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상·중·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자, 동률일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평정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불합격 처리 기준
 -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10. 기타(유의) 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 응시서류의 착오 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면접시험 장소 및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문의처
 - 채용·직무관련: 행정복지국 행정과 인사담당 ☎ 055-670-2093